

#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. 10. 5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2. 10. 13

다. 상정일자 : 제19회 사하구의회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1992. 10. 15) 상정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)

○ 심사대상 물품은 총 28개 품목 60점으로 신규취득은 17개 품목 30점으로 행정수요에 요구되는 컴퓨터, 모사전송기 등이고 대체취득 11개 품목 30점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물품은 처분하고 대체취득코자 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

○ 내구년한이 경과한 물품은 전량 동의하고 비디오카메라, 냉장고, 텔레비전 등은 고려하여야 할 것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가. 질 의

○ 김정현 위원

- 행정수행을 위해 불요불급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?

○ 답 변

- 물품은 각 실·과에서 필요한 물품만이 책정되었고 비디오카메라, 냉장고, 텔레비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

5. 토론요지 : 없 습

6. 심사결과 : 원안대로 의결(재석위원 13중 찬성 10명, 반대 3명)

7. 기타사항

- 신규취득 물품들은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하지만 지역경제과 비디오카메라, 가정복지과 냉장고, 보건소 텔레비전은 제외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지만 수정동의 표결결과 찬성 3명, 반대 8명, 기권 1명으로 부결